

#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1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의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  
함진규 · 정태옥 · 박인숙  
한선교 · 경대수 · 박찬우  
성일종 · 강효상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4조제3항에서 “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상담소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, 「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(이하 “상담소등”이라 한다)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”로 규정되어 있으나, 「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은 2011년 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되었음.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 따라서 ‘「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’을 ‘「성폭력

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4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「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”를  
“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